장성군의회 공고 제2022-25호

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이 타 시·군에 비해 낮아 보훈에 대한 예우 및 사기앙양을 위해 인상안을 검토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원범위 인상(안 제9조)

- 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) 1항 중 “50,000원”을 “100,000원”으로 한다.

4. 예고기간

❍ 예고기간 : 2022. 8. 31. ~ 9. 6.

❍ 예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의회자료실-조례안예고)

5. 조례안 : 붙임

6. 의견 제출

❍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❍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❍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❍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
장성군 조례 제 호

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50,000원”을 “10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)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0,000원의 보훈명예수당(이하 "명예수당"이라 한다)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) ① ----------100,000원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